

2009년 지방세제 개편방향

변 성 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I. 서론

2008년 9월 리만브라더스 파산 등으로 심화된 세계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2009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OECD 선진국은 마이너스 성장, 중국의 경우 5~6%대의 성장이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2~3%대의 성장이 예상되나 낙관적인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부는 경제위기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쟁적으로 대규모 감세와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의 세계적 경제위기는 누가 얼마나 빨리 극복하는가에 따라 국가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으로 위기이자 기회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국민경제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고려할 때, 지방세분야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함은 물론 지방세 체계 선진화 과제를 차질없이 완료하여 위기 너머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II. 2008년 지방세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1. 2008년 정책성과

정부에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지방세체계 선진화 등 지방세분야의 핵심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였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합리적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였고 다각적인 공론화노력으로 제도 도입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5일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0년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목표로 오는 5월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또한 지방세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였다.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수요자 중심의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분법안은 정부입법 완료단계에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만성적인 비과세·감면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반성 및 시사점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지방세법 분법 등 핵심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최종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방소득·소비세의 경우 비록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부부처 간 협의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향후 관계기관에 대한 전략적인 설득, 합리적인 대응논리 개발,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유대 강화 등 전방위적 협상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08년에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관계부처 등의 요구에 따라 후속 조치¹⁾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지방세를 효과적인 경기조정 완충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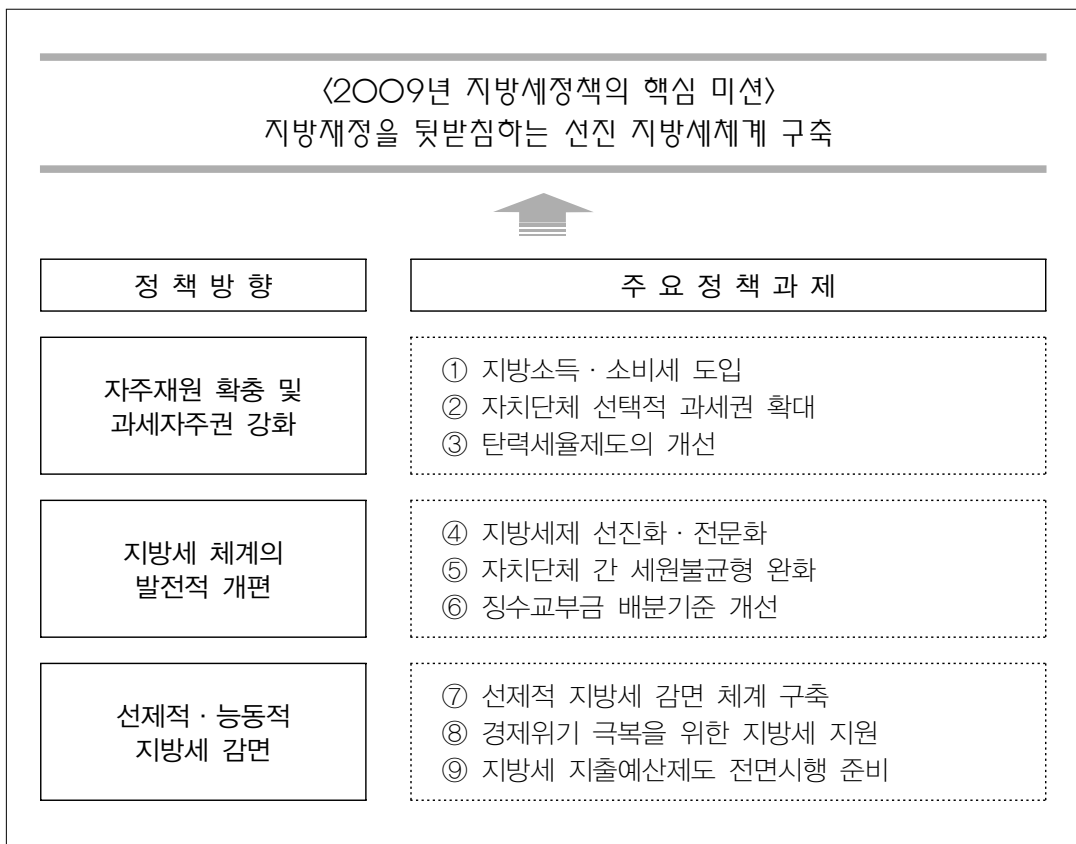
1) 지방미분양주택 거래세 완화(정부합동미분양대책), 지방회원제품포장 감면(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등

Ⅲ. 2009년 지방세제 개편방향

올해는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으로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된 지방세 구조의 특성상 상당한 규모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수단 확보가 필요해 짐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다. 경기침체의 충격이 개별산업과 서민생활에 파급됨에 따라 각 산업계의 감면요구가 거세지고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 지방세분야의 주요 정책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 자치단체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분법을 마무리하고 세원불균형 완화 방안 마련 등 지방세 체계의 발전적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선제적·능동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운영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다.

〈2009년 지방세제 개편방향〉



1. 자주자원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왜곡된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주자원 확충과 과세자주권 강화가 필요하다. 세부과제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자치단체 선택적 과세권 확대, 지방세 탄력세율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1)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논의는 민선자치 실시 이후부터 지속되어 그간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었다.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결국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른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가로 논의가 집중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구·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최근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권 집중 문제는 민감한 과제이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른 수도권 집중도 심화에 대해 우려할 수는 있으나, 제도 도입을 지연하기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통해 수도권 집중도 완화를 추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왜곡된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이 분명하므로 각계의 지혜를 모아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2월 15일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0년까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목표로 오는 3월에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고 5월까지 도입방식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 단계를 명확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지방소득·소비세가 조세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으나, 수도권 세수집중 완화라는 현실적 과제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즉 이론과 현실이 적절히 조화되는 도입방안이 필요하다. 그간 학계에서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면서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한 바 있다.

참고로 지난 11월 25일 발의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방안에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내재되어 있다. 주된 내용은 부가가치세의 20% 이양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현행 국세인 법인세·소득세액의 10%로 부가되는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과세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총액을 민간최종소비지출 지표로 시·도에 배분하되, 지역별로 소비지출에 대한 반영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많은 세수가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의원발의('08.11.15) 지방소득·소비세 도입방안 요약〉

구 분	방 식	Key Point	세수귀속
지방 소비세	〈공동세 방식〉 ■ 부가가치세 10→8% 지방소비세 2% ■ 지역별 가중치 적용	■ 지방의 소비행위 촉진에 대해 수도권보다 강한 인센티브 부여	특별·광역시세 도세
지방 소득세	〈독립세 방식〉 ■ 세원 이양 없이 소득할 주민세(지방세)를 독립과세로 전환	■ 세원 이양은 없으나 국세 감세 따른 주민세 축소 방지 ■ 자치단체의 조세 정책 수단 확보	특별·광역시세 시·군세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일본이나 독일 등도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에 단순히 소비수준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수준 보완지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수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소매판매액, 인구수, 종업원수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인구수와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사례는 수도권 세수집중 완화 장치를 내재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방안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자치단체 선택적 과세권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결정권은 과세 자주권의 핵심적인 요소²⁾ 중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법정외세처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목을 신설하고 세율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2) 세목 결정권, 세율 결정권, 과표 결정권, 감면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부에서는 지방세 확충 수단으로 법정외세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나,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영세성,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분리원칙³⁾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나 현실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세수의 영세성, 납세자의 반발 등으로 법정외세가 도입 후 폐지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정외세 무용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국과 일본의 법정외세 관련 규정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현 법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117조)	· 세금을 새로이 부과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84)
지방세법	·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의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 지방자치단체는 법정세목 외에 별도로 세목을 설치하여 보통세를 부과할 수 있다(§4, §5)

따라서 지역의 부존세원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치단체가 조례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선택적 과세제도 확대를 통해 과세 자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세법 상 선택적 과세가 가능한 세목은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이다. 지역개발세의 경우 과세 가능 세원이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으로 제한적 열거되어 있다.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방시설에만 과세되고 있다.

선택적 과세권 확대 방향은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것보다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통해 과세할 수 있는 세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하여 응익적 차원의 과세를 추진하고 지역경제활동과 지방세수의 연계를 위해 다양한 세원 발굴을 추진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 골재채취, 해저자원 등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거나 쓰레기매립장, 폐기물처리장, 화장장, 공동묘지 등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통해 과세 타당성이 높은 세원 발굴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4)

4) 교토시 ‘고도보존협력세’, 카나가와현 미우라시 ‘요트·모터보트세’ 등 폐지

3) 지방세 탄력세율제도 개선

지방세 탄력세율제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세율을 가감⁵⁾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지방세 16개 세목 중 11개 세목⁶⁾에 적용되고 있다. 자치단체는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세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의 가격기능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세의 절대적인 규모가 작고 지방세의 구조가 재산과세 중심인 상황에서 탄력세율 활용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탄력세율제도가 재원조달기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활용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탄력세율 제도의 개선방향은 지방소득과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활성화하는 것과 기존 탄력세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전제로 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소득과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를 설계할 것이다. 또한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11개 세목을 검토하여 현행 법정세율을 최저한세율로 변경⁷⁾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목적세인 지역개발세가 지역의 행·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의 상한을 대폭 확대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세 체계의 발전적 개편

지방세법령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전면적인 제도개선의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세 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틀을 마련하고 내부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높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 작업 마무리, 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 완화, 징수교부금 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1)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

지방세법은 1949년에 제정되고 1961년 전부 개정되었다. 이후 140여 회에 이르는 잦은 개정을 거치면서 내용과 편제가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납세자 뿐만 아니라 과세권자나 관련 전문가조차 이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단일법 체계로 인해 분야별 전문화에 한계가 있어 수요자 중심의 선진적·전문적 지방세 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5) 취·등록세, 재산세 등의 경우 조례로써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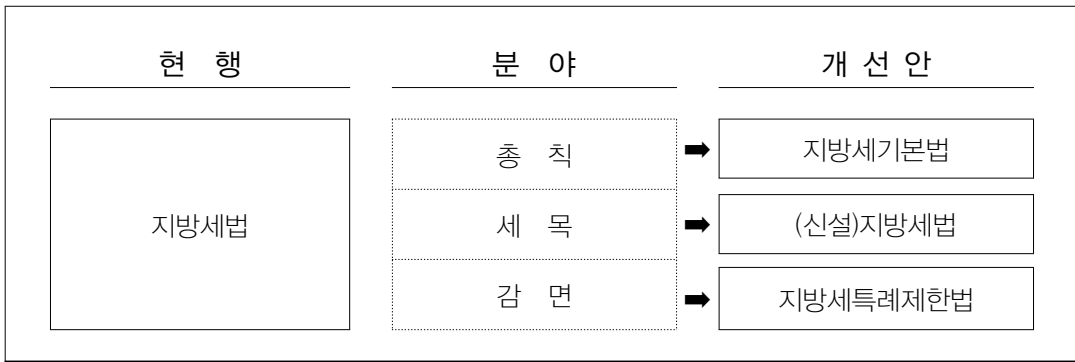
6)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7) 예시 : 법정세율의 $\pm 50\%$ \Rightarrow 법정세율의 $+50\%$ 만 허용

8) 예시 :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 $10\text{m}^2\text{당 } 2\text{원} \pm 50\% \Rightarrow 2\text{원} + 100\%$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는 내용적 측면에서 관허사업 제한 완화,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 처분 유예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현행 16개 세목을 9개 세목으로 대폭 간소화하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담고 있다. 형식적 측면에서 단일법 체계인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화하는 분법을 추진한다.

〈지방세법 분법 추진 개념도〉



지난 9월 2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발표하였다. 이후 전문가 포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현재 정부입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정부입법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지방세법 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 시군구 지방세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2010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2) 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 완화

우리나라는 지역간 인구 규모, 산업현황 등의 차이로 자치단체 간 세원이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자치단체 균형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특광역시세와 구세,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는 현행 2원적 세목배분구조는 자치단체의 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세목교환, 세목배분구조 조정 등을 통한 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세목교환은 지역적으로 분포가 고른 세원을 기초세목으로 배분하고 불균형도가 높은 세목은 광역세목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것이다. 다만 현행 지방세 세목이 전반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크기 때문에 공동과세를 확대⁹⁾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동과세가 활성화된 독일 등 외국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세목이 자치단체 행정계층별 특성과 규모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2원적 세목체계를 다원적 세목체계¹⁰⁾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은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와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세목의 배분과 사무의 배분은 밀접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국가, 시도, 시군구간 사무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 내의 세목 배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징수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징수교부금은 시·도가 시·도세의 부과·징수를 시·군·구에 위임하고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31조에 시·도세 징수 총액의 3%를 시·군·구에 교부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군·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징수교부금 산정시 징수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징수건수를 기준으로 징수교부금을 배분할 경우 일견 재정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개별 시·도별로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교부액 상위 6개구의 징수교부금이 감소하고 나머지 구는 증가하여 재정불균형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수원·고양·안양의 경우 징수교부금이 증가하게 되나, 가평·양평 등은 오히려 징수교부금이 감소하게 되어 재정불균형 완화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징수교부금은 원칙적으로 시·도세 징수액의 3%를 교부하되 시·도의 조례로 징수액 외에 징수건수 등 다른 기준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시·도별로 관내 시·군·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게 될 경우 재정불균형 완화와 시·도의 자율성 강화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선제적·능동적 지방세 감면 추진

조세는 경제주체에게 강력한 유인을 발휘하는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투자촉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선제적·능동적 지방세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지방세 감면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감면모델을 정립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전면 도입을 위한 준비를 추진할 것이다.

9)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의 효과 : 구청간 세수격차 완화 [도입전 14.8배('07) → 도입후 5.9배('17)]

10) 예시 : 특별시세-자치구세, 광역시세-자치구세, 도세-시세, 도세-군세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 지원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주공이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감면할 것이다. 다중 주택은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위해 공급되고 있어 도심지 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부문에 대한 유동성 제고의 일환으로 토공이 건설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지방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공과 대한주택보증의 건설부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토공이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비축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50%감면하고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위축은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해 외투기업, 지역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할 것이다. 현재 외투기업은 외투비율만큼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외투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은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촉진지구·산업단지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시행자만 감면하던 것을 SOC·낙후지역 등 개발사업시행자까지 감면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시 : 외투비율 70%인 법인이 50억원의 건물 취득〉 ※ 외투비율 50% 이상 면제시

취득가액	산출세액		(현행) 납부세액		(개선) 납부세액	
	취득세(2%)	등록세(2%)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50억원	1억	1억	3천만	3천만	0원	0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효과가 수혜자에게 신속하게 파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 오는 2월까지 지방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는 진행하고 시행령 개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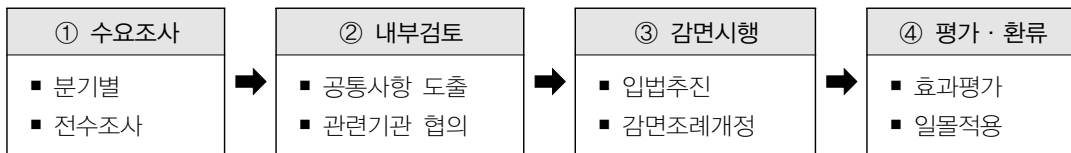
2) 선제적·능동적 지방세감면 체계 구축

그간 다양한 지방세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수동적 대응으로 지방세 지원의 역할이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

지기 보다는 개별적·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 지방세 감면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지방세 감면의 효과성을 높이고 미래적 감면 모델을 구축하여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지방세 감면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기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기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체계적 지방세 감면 프로세스」를 확립할 것이다. 특히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는 기업환경 개선,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과제를 집중 발굴·검토할 것이다.

〈체계적 감면 프로세스 개념도〉



저탄소 녹색성장분야 지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정책환경에 대한 예측·분석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지방세 비과세·감면 모델」을 정립할 것이다. 더불어 비과세·감면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 평가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3)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전면 시행('10년) 준비

비과세·감면은 숨겨진 보조금(hidden-subsidy)으로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07년 결산을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11.3조원에 이르며 이는 지방세 총수입의 20.9%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감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지출예산제도¹¹⁾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2006년 17개 자치단체에 대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7년 32개, 2008년 126개를 거쳐 2009년에는 모든 자치단체로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2010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해 온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조사”를 금년에 완료하고, 제도 시행을 위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지출보고서 서식 보완 등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자치단체 대상 설명회 및 시범 운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11)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시하는 제도

IV. 맺음말

2009년은 국가적으로 선진국 진입 여부가 판가름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빨리 위기를 극복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 극복의 방식은 눈앞의 위기에 대응한 임시방편적이고 수동적인 대처가 아니라 위기 너머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한다. 즉, 국가운영의 전반적인 틀에서부터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선진 체계에 걸맞도록 개편해야 한다.

지방세분야에 있어서도 2009년에 당면 위기를 주도적으로 극복함은 물론 지방세 체계 선진화를 위한 핵심정책과제를 완료하고자 한다. 자치단체가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자주권 확대를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선진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세법 분법 등 지방세체계의 발전적 개편을 완료할 것이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차원의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지방세법령의 입법과 관계공무원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제도 정착에도 힘쓸 것이다. 학계 등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는 지방세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2009년이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고 지방세의 미래를 준비한 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을 확신한다. ☺

